

【붙임 1】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 기업 모집 변경 공고

◇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기업 모집('24.12.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신기술 우대지원(외부강사 수당) 변경
- 적용기준: 변경공고일(4/18)부터 승인된 과정개발보고서

2025년 4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개요

1. 사업명 : 체계적 현장훈련(S-OJT)

※ S-OJT : Structured – On the Job Training

2. 사업 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실시를 지원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HRD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 추진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3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제1항제13호 및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제3항제17호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1호)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 규칙」 제29조(모집공고)
-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업무 매뉴얼

4. 훈련 개요

- (훈련내용) 기업 현장의 개선과제를 PBL* 방식으로 구성하여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무중심의 문제해결을 통해 직무역량을 고도화 하는 체계적인 현장훈련

* PBL : Project/Problem Based Learning

구분	내용	
훈련 목적	· 현장 문제해결 및 과제(미션) 달성을 통한 직무역량 고도화	
과정 개발	· 표준개발(능력개발전담주치의 컨설팅)	· 맞춤개발(외부전문가 컨설팅)
훈련 시간	· 4시간 이상	
훈련 인원	· 10명 이내	
훈련 관리	· 훈련시간표 활용 / 출결 관리(비콘·QR코드)	
훈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참여자(훈련생) 주도형· 프로젝트/문제해결 수행 방식- 현장 문제해결, 목표 설정 후 완료 목표 운영- 현장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단계적 수행 · 결과물 제출- 암묵지의 문서화를 통한 노하우 전수	
훈련 강사	사내강사	외부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운영 팀장· 업무 노하우 전수· 훈련평가(과정·결과평가) 실시·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현장훈련 강의)· 전문 노하우 전수· 훈련평가(과정·결과평가) 지원·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훈련 결과	· 훈련결과 보고서, 결과평가 등	

II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2. 지원규모 : 2,400개소(예산 16,100백만원)

3. 신청기한 : '25. 1. 2.(월) ~ '25. 10. 31.(금)까지(상시접수)

※ 단, 공단 지부·지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4. 참여 절차



- ① “HRD4U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www.hrd4u.or.kr/hrddoctor/web)”에
기업 회원가입
- ② **(기업HRD이음컨설팅)** 기업 현황 및 훈련수요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적합한 훈련사업(과정)을 매칭
- ③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신청)** 기업HRD이음컨설팅에서 체계적 현장
훈련이 매칭된 경우 체계적 현장훈련에 참여 신청
- ④ **(참여요건 심사 및 최종선정)**
 - 심사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심사시기: 상시(신청일을 기점으로 10일 이내 기산(토요일, 공휴일 제외))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기업과 협의하여 1회(10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
 - 참여요건 심사내용: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② 휴·폐업 사업장
여부, ③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④ 임금체불사업장 여부, ⑤
산재다발 사업장 여부, ⑥ 참여 제한 대상 등 참여요건 심사
※ 참여요건 심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통보: 공단 지부·지사에서 해당 기업에 선정 알림 통보(유선 등)

참여 제한 대상

- ①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②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 ③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24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물 확인
- ④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⑦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비영리사업자(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3. 협회 및 단체(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4.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5. 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⑧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 * ② ~ ③은 신청일 기준 최신 공표 사업장 명단 기준
 - * ④ ~ ⑧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⑤ (과정개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훈련과정 개발 진행

과정개발 유형	개발 방식	주요내용	과정개발 결과물
표준개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컨설팅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기업의 훈련과정을 AI가 추천	과정인정서
		주치의, 기업 내부전문가가 현장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 맞춤형 과정 개발 * AI추천과정 활용	
맞춤개발	외부전문가 컨설팅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과정개발 컨설팅을 진행, 현장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PBL방식 훈련 개발	과정개발 보고서

⑥ (과정인정) HRD-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시작일 5일 전까지 해당 과정을 인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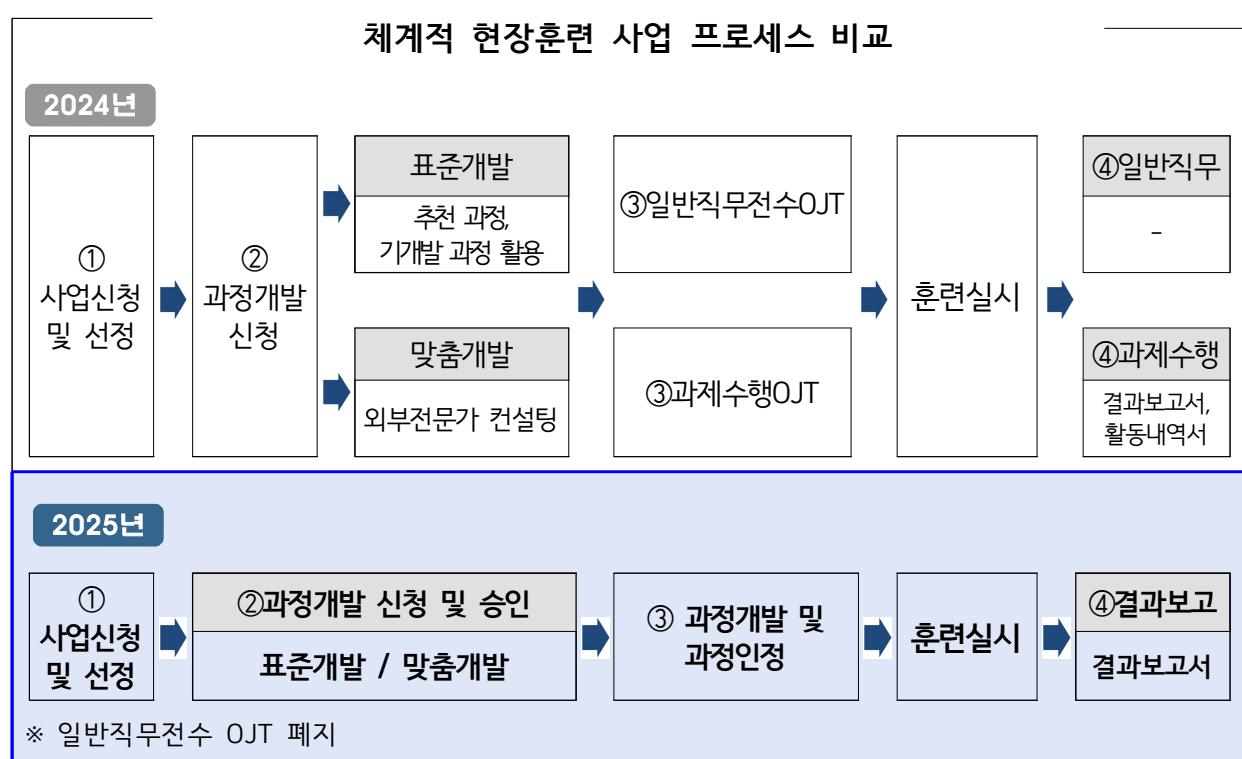
* 단, 과정 인정 전까지 사내강사 교육 이수 완료 必

- ⑦ **(훈련실시)** 기업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 훈련을 실시
- ⑧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수료 보고를 하고, 공단 소속기관으로 과정개발비, 강사수당, 훈련비를 신청

III

세부 내용

- **(훈련직무)** 기업의 생산활동, 현장 개선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대상으로 하며, PBL방식의 훈련이 가능한 직무에 한하여 참여 가능
 - ※ 참여 가능 직무(PBL방식)의 판단은 공단 지부·지사의 고유권한
 - 참여 가능 직무는 16개 분야로 NCS 분류 체계(소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
 - ※ 세부 훈련직무 (붙임 1) 참고
- **(과정개발)** 기업여건에 맞게 과정개발 유형을 선택하여 과정개발



- (지원내용) 훈련과정개발(컨설팅), 지원금(강사수당, 훈련비), 역량교육

구분	체계적 현장훈련(S-OJT)		
강사 역량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PBL 개념 등 사내강사 교육 지원 · 교육방법: 온라인 과정(기본 5시간 + 심화 2시간) 기준 오프라인 집체과정(5시간) 신규 ※ 분기별 1회 개설 · 교육신청: www.ojtlms.koreatech.ac.kr (개인회원가입 필요) 		
비용 지원	훈련과정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PM):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HRD,직무):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X 300% 	
	사내강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차당 최대 100만원 	
	외부강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차당 최대 300만원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개발 한도 : 기업당 3개 과정(과정당 1회차 운영) · 강사료(내·외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훈련비: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이음컨설팅 등 		

IV

기타 안내사항

- 모니터링 시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중단 및 선정취소될 수 있음
 - * 부정·부실훈련이 적발되는 경우 등
- 사업주(기업)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는 기업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 * 타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참여로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원 불가
- 추가 훈련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선: 052-714-8277

불임 1

세부 훈련직무

분야 (NCS 대분류 코드)	세부 직종 (NCS 중분류 코드)
1. 경영·회계·사무(NCS 02)	생산·품질관리(NCS 04_01, 02, 03)
2.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NCS 05)	소방방재(NCS 02_01, 02)
3. 보건·의료(NCS 06)	보건(NCS01_01, 02, 03)
4. 문화·예술·디자인(NCS 08)	디자인(NCS02_01), 문화콘텐츠(NCS03_01~04)
5. 운전·운송(NCS 09)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6. 건설(NCS 14)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7. 기계 (NCS 15)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8. 재료(NCS 16)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9. 화학(NCS 17)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10. 섬유·의복(NCS 18)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11. 전기·전자(NCS 19)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12. 정보통신(NCS 20)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13. 식품가공(NCS 21)	식품가공(NCS01_01, 02, 03)
14. 인쇄·목재·가구·공예(NCS 22)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15. 환경·에너지·안전(NCS 23)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16. 농림어업 (NCS 24)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